

경운대학교 교육선진화추진단규정

제1조(명칭) 본 기구는 경운대학교(이하 '우리대학교'라 한다) 교육선진화추진단(이하 '교육선진화추진단'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교육선진화추진단은 우리대학교의 인재상인 '사회친화적 실용인재 양성'의 완성과 대학핵심역량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계획, 운영, 조정 및 성과분석과 환류체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.

제3조(기능) ① 교육선진화추진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
1. 교육과정(교과 및 비교과) 개발·운영·분석 및 평가·환류 및 개선 기능
 - 가. 교육혁신 모델 개발과 확산
 - 나.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
 - 다. 강의개선 기본계획 수립
 - 라. 교육과정 운영성과 결과분석
 - 마. 교육과정 및 강의개선방향 도출
 - 바. 교육과정 정책 및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
 - 사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무
2. 폐과 및 정원축소 학과의 진로지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전담기구로서의 업무
- ② 기타 교육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추진단) ① 교육선진화추진단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

② 교육선진화추진단의 구성은 교무부처장, 인재개발부처장, 기초교육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교육선진화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선진화추진단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,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추진단장 및 교무처장, 벽강교양대학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.

④ 제반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⑤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강의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3. 교육과정 개발·운영·분석 및 평가·환류 및 개선에 대한 사항
4. 교육과정 운영평가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
5. 폐과 및 정원축소 학과의 학칙 및 제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 발의
6. 기타 교육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
제7조(운영위원회 회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